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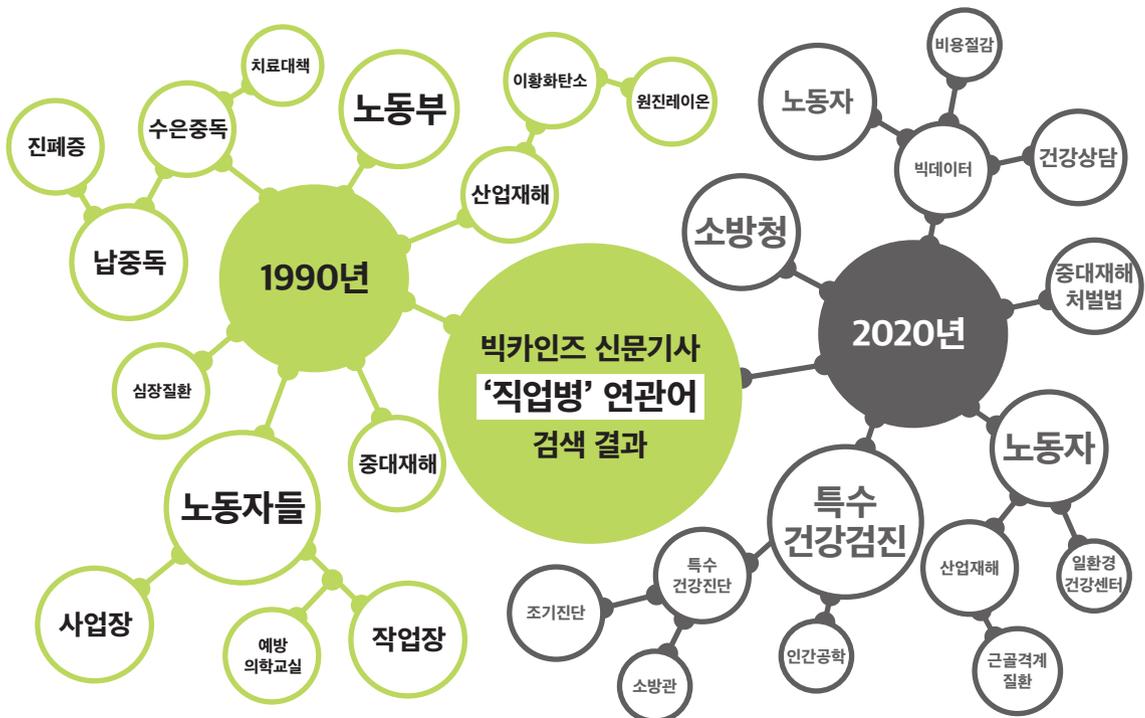


원종욱
연세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의 교수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모든 것

들어가며

산업재해나 직업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제외하면 대다수 국민은 여전히 산업재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산재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해 울분을 터뜨리지만 왜 보상을 못 받는지, 어떻게 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지 등을 잘 모른다.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260만 개가 넘고, 가입 노동자가 1,900만 명에 달하지만 산재보험을 잘 아는 노동자가 몇이나 될까? 보험료는 누가 얼마나 내는지, 내가 가입돼 있는지, 어떤 때 보상받을 수 있는지 등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 이제부터 본 칼럼을 통해 산재보험의 모든 것을 하나씩 알아보려고 한다.



직업병에도 유행이 있다?

여러분은 ‘산업재해’, ‘직업병’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가 1990년, 2020년 각각의 신문기사에서 직업병 연관 검색어를 찾아봤다. 우선 1990년에는 이황화탄소, 원진레이온이 눈에 띈다. 1,000명 가까운 이황화탄소 직업병 노동자를 양산한 ‘원진레이온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납중독, 진폐증, 수은중독 등 전통적인 직업병을 기사화했다. 2020년에는 특수건강검진, 소방관, 근골격계,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이 검색됐다. 소방공무원에게 직업병이 많다는 보도, 근골격계질환과 관련 인간공학 그리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도 있다.

이처럼 시대가 변하면 직업병의 종류와 직업병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진다. 1990년은 ‘88 서울올림픽’이 끝난 후 직업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여러 가지 전통적 직업병을 진단, 보도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1990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근골격계질환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소방공무원과 같은 특수 직종에서 발생하는 직업병에도 관심을 보였다.

빅카인즈로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2020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눈에 띈다. 요즘 문제가 되고 되는 ‘산재 사망’과 이를 방지하고자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장 이슈다. 산업재해나 직업병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개 ‘예방’을 말한다. 예방이야말로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우리 사회에

서 추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은 ‘내가 당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가 더 큰 관심사다. 산재로 인정되면 적절한 보상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본인이 모두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산재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때 자신은 물론 부양가족까지 파산할 위험에 직면한다. 더욱이 산재보상 외에 구제책이 없는 상황이라면 산재보상에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럼 일하다가 다쳤는데도 어떤 것은 산재나 직업병으로 처리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뜻일까?

산업재해자는 왜 억울할까?

사람들은 보통 ‘일하다가 다쳤거나 병에 걸렸으면 모두 산재인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생각한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것이 명확하면 산재나 직업병이 당연한데, 왜 문제가 될까? 산재로 왜 인정되지 않는 걸까? 인터넷 포털에서 ‘산재 불승인’을 검색하면 이를 담당하는 수많은 변호사, 노무사의 광고뿐 아니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산재 환자들의 사연도 접할 수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가 나쁘다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일까?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일하다가 다쳤는데 목격자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다친 경위와 부상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 “일하다가 다쳤다”고 명확히 말하기가 쉽지 않다. 당사자는 억울하겠지만 부당 청구하는 유사한 사례가 있어 재해자의 말을 쉽게 믿지 않을 수도 있다.¹⁾ 그래도 사고로 다쳤을 때는 장소와

1) 미국에서는 월요일에 발생한 산재가 다른 요일보다 많다. 그 이유는 월요일에 하루 더 쉬고 싶어 피병으로 아프다고 하거나, 주말에 다친 것을 산재보상 받으려고 월요일에 회사에서 산재로 신청하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https://dzinjurylawyers.com/monday-workplace-injuries/>)

시간이 명확하다면 산재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이 산재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는 5% 미만이다. 반면 직업병은 매우 복잡하다. 질병은 발생 시기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암은 원인이 다양한 데다 발병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사람도 적지 않아 직업병 여부를 판단할 때 논란이 많고 승인율도 업무상 사고보다 낮다.²⁾

업무상 재해·질병의 판단 기준은?

산재보험에서는 산업재해를 ‘업무상 재해’라고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³⁾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때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업무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이해하는 정도다. 과거에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했다.⁴⁾ 전문가들은 이를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이라 지칭하고, 업무상 재해는 둘 다 충족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사고에 적용하면 뜻이 조금 명확해진다.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명백히 산재가 된다. 그래서 지금도 업무상 사고를 말할 때 업무 수행성이 있는지 또는 업무 기인성이 있는지를 따진다. 과거 직업병이 많지 않았을 때는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으로 산재를 판단하는 것에 문제가 없었다.⁵⁾

직업병의 경우 업무 수행성을 따지는 게 쉽지 않다. 업무 수행성이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라는 요소를 빼놓을 수 없는데, 직업병의 경우 발생 장소와 시간을 어떻게 봐야 할까? 1980년대 초반 가장 많았던 진폐증을 예로 들어보자. 질병이므로 발생 장소는 논외로 해도 발생 시간을 정하는 게 쉽지 않다. 만약 오늘 진폐증으로 진단받았다면 오늘을 발생 일자로 봐야 할까? 오늘을 발생 일자로 본다면 어제나 한 달 전 그리고 1년 전에는 진폐증이 없었을까? 다행히 노동자가 같은 회사에서 수년째 근무 중이라면 별문제가 없다. 그런데 한 달 전 또는 1년 전에 퇴사했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당연히 직업병으로 봐야 하지만 앞서 말한 업무 수행성을 충족하기는 어렵다.

암의 경우 더 복잡하다. 업무 기인성은 업무 때문에 생긴 것을 말하는데, 암의 원인은 한 가지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유해 요인에 의해 발생했는지를 따지는 게 쉽지 않다. 암은 발암물질에 노출됐다고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잠복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회사에 다닐 때 발암물질에 충분히 노출됐더라도 잠복기가 필요하니 퇴직 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즉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을 충족하는 것으로는 질병과 직업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질병에 업무 수행성을 적용하기

2) 2019년 일반 노동자의 업무상 사고 승인율은 96.2%인 반면에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60.7%였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월간 <노동법률> 2020.11 재인용)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제 1항. 2020년 6월 9일 시행. 1982년 1월 1일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부터 이처럼 정의하고 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용어의 정의) 제 1항. 1981년 4월 8일 시행.

5) 사실 직업병이 많지 않았다고 직업병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관심이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6) 동아일보. 1964년 7월 13일 사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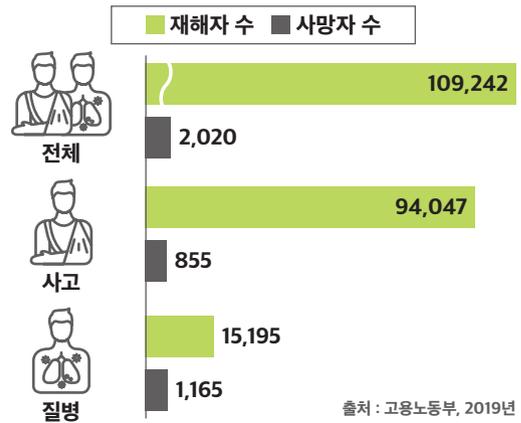
어려워 1982년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사망으로 정의했다. 그래도 여전히 업무상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앞에서 제기한 문제로 돌아가보자. 산재나 직업병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들었다면 모두 보상해주면 되지 않을까? 맞는 말이다.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유럽 국가들에서는 산재나 직업병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개인 질병을 포함, 아픈 사람들을 모두 치료해주고 적절한 휴업급여도 지급한다. 이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생각과 관련이 있고, 국가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이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산재나 직업병은 예방이 중요하다. 그러나 재해를 당한 노동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보상이 더욱 중요하다. 1964년 우리나라가 산재보험을 도입했을 당시의 <동아일보> 사설 한 부분을 인용해본다. “재해는 미리 막아야 한다. 그리고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⁶⁾

어두운 보상의 길, 산재보험제도로 밝히다

기업이나 다른 사람에게 고용돼 일하다가 다치면 사업주나 고용주가 치료와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업주가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까? 예를 들어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다했는데도 노동자가 자신의 실수로 다쳤거나, 사업주의 지시를 어기고 일하다가 다쳤다면 어떨까? 과거에는 사업주가 보상해주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지금은 두 경우 모두 산재보상의 대상이다. 물론 이렇게까지 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보자. 노동자가

노동자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단위: 명)



일하다가 다쳤는데 기업과 사업주가 영세해서 충분한 보상을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또는 발암물질을 취급하는 일을 20년간 했는데 퇴직 후 발암물질로 인해 암에 걸렸다. 그럼에도 다니던 회사가 폐업해 보상받기 막막하다면? 이 또한 과거에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었다. 억울하지만 운이 나쁘고 운명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은 산재보험제도를 도입해 해결하고 있다.

현대의 산재보험제도는 어떤 경우든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든 사람이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아직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수도 있다. 산재보험제도는 지금도 발전하는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는 최근 수년 동안 급격히 발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직업병으로 생각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반면에 과도하게 보상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음 호부터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살펴 보고자 한다. ☺